

## 유기 영아 보호법

뉴욕주 유기 영아 보호법(Abandoned Infant Protection Act)은 신생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. 이 법에 따라 부모가 신생아를 안전한 장소에 맡길 경우 부모의 형사 고발을 방지하고 익명으로 부모의 신분을 보호합니다.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아래 경우에 한 해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책임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아이를 유기할 경우 아동 복지 위해 혐의 또는 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지 않습니다:

- 아이를 물리적 상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히 보살피기를 원하는 경우
-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적절한 장소에 아이를 위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의 소재를 즉시 알릴 경우
- 아기가 생후 30일 미만의 유아인 경우.

유기 아동 보호법에서는“적절한 장소” 또는“믿을 수 있는 사람”을 명시하지 않습니다. 각 지역 지방 검사가 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. 하지만, 소방서, 경찰서, 병원과 같이 직원이 있는 장소가 생후 30일 미만의 유아를 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고려됩니다.

뉴욕주 법률에 따라 아동 학대 및 혹사 뉴욕주 중앙 등록부(아동 학대 핫라인)에 유아 유기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. 하지만, 자신의 아기를 유기할 경우 유기 영아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.

[ocfs.ny.gov/main/safe](http://ocfs.ny.gov/main/safe)



Office of Children  
and Family Services

“우리 아이, 가족, 지역 사회의 안전, 생명,  
행복을 지키도록...”

Capital View Office Park  
52 Washington Street  
Rensselaer, NY 12144

홈페이지 주소:  
[ocfs.ny.gov](http://ocfs.ny.gov)

유기 영아 보호법에 의거 영유아를 안전하게  
위탁할 장소에 관한 문의:  
**1-866-505-SAFE (1-866-505-7233)**

육아, 위탁 보호, 입양에 관한 문의:  
**1-800-345-KIDS (1-800-345-5437)**

아동 학대 및 방임 고발 문의:  
**1-800-342-3720**  
**1-800-638-5163 (TTY/TDD)**

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문의:  
**1-866-871-3000**  
**1-866-871-6000 (TTY/TDD)**

장애인 보호법에 의거하여,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서는 요청에 따라 이 자료를 적합한 형태로 제공할 것입니다.


발행. 4745 (개정 6/2015)



임신이세요?  
두려우세요?  
도움이  
필요하세요?



Office of Children  
and Family Services



임신이세요?  
두려우세요?  
혼자이신가요?

원치 않는 아기가  
유기되어 사망할  
위험에 처하지  
않을 수 있습니다.

아기와 엄마를  
위한 희망이  
있습니다!

**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.**  
아이를 포기하고 싶다면 **법에 도움을  
요청하십시오.** 아기가 생후 **30일  
미만이고**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 
있도록 조치를 취하면, **합법적인  
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**  
아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.

• **아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 
맡기십시오**(예: 경찰관, 소방관,  
병원 직원)

**또는**

• **안전한 장소에 아기를 놔두십시오**  
(예: 병원, 경찰서, 소방서), **그리고  
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기의  
소재를 즉시 알리십시오.**

**어떤 방법을 선택하든,  
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 
않아도 됩니다.**

유기 영아 헬프라인:  
**1-866-505-SAFE (7233)**

**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고 있나요?**

즉시 상담을 원하거나 거주 지역 내 상담 의뢰를  
원하시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:

- 연방 자살 방지 라이프라인:  
**1-800-273-TALK (1-800-273-8255)**
- 연방 가출 상담 전화:  
**1-800-RUNAWAY (1-800-786-2929)**
- **2-1-1** (뉴욕주 여러 지역에서 상담 의뢰 가능)
- **3-1-1** (뉴욕시 내에서만 상담 의뢰 가능)
- **LIFENET** (뉴욕시 내 정신 건강 의뢰)  
**1-800-LIFENET (1-800-543-3638)** (영어)  
**1-877-AYUDESE (1-877-298-3373)**  
(스페인어)  
**1-877-990-8585** (한국어, 만다린, 광둥어)  
**1-212-982-5284** (청각 장애자를 위한 TTY/TDD)
- 가족 계획: **1-800-230-PLAN (1-800-230-7526)**  
[www.plannedparenthood.org](http://www.plannedparenthood.org)
- 뉴욕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헬프라인:  
**1-800-CHILDREN (1-800-244-5373)**

**입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?**

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입양을 고려해보십시오.  
다양한 인종과 연령대로 구성되고 각기 다른  
생활 방식과 종교를 가진 많은 뉴욕주의 가정의  
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 
원합니다.

입양에 관한 **비밀 보장**과 가족, 친구에게 입양  
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 
입양과 관련해 아동 보호서비스(Child Protective  
Services)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.

민간 입양기관(승인 받은 자선단체) 또는  
사회복지 지역 사업부(뉴욕시의 경우  
아동보호국(ACS))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 
있습니다. 지역 전화번호부 또는 온라인  
디렉토리, 뉴욕주 아동 및 가족복지부 홈페이지

**[ocfs.ny.gov/adopt/agcymenu.asp](http://ocfs.ny.gov/adopt/agcymenu.asp)**

에서 입양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.